

● 제332회 ●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장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이병도 의원 대표 발의 (의안번호 3004)
- 서울특별시시장 제출 (의안번호 3035)

2025. 09. 03.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이병도 의원 대표 발의】 의안번호 3004

【서울특별시상 제출】 의안번호 3035

I. 조례안 개요

1. 이병도 의원 대표 발의안(의안번호 3004)

가. 제안경위

- (1) 발 의 자 : 이병도 의원 외 24명
- (2) 발의일자 : 2025년 08월 11일
- (3) 회부일자 : 2025년 08월 14일
- (4) 입법예고 : 2025. 08. 20.~ 2025. 08. 24.

나. 제안이유

- 현행조례는 신체활동장려사업의 지원대상을 서울시민 외에 ‘서울 소재 직장 종사자’까지 포함하고 있음.

이는 조례의 기본 취지인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이라는 목적 및 적용 대상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서울형 헬스케어(손목닥터9988)’ 사업은 지원대상을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서울소재 직장인·대학생·자영업자’까지 확대 운영하고 있어 조례와 실제 사업 간에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음.

- 또한, ‘서울형 헬스케어(손목닥터9988)’ 사업의 참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포인트 지급에 소요되는 예산이 급증하면서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신체활동장려사업의 지원대상을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

람'으로 한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조례 해석 및 적용의 혼란을 방지하고, 제한된 예산을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신체활동장려사업 참여 지원 대상자를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여 규정함.(안 제9조제3항)

2. 서울특별시장 제출안(의안번호 3035)

가. 제출경위

- (1) 제 출 자 : 시장
- (2) 제출일자 : 2025년 08월 11일
- (3) 회부일자 : 2025년 08월 14일
- (4) 입법예고 : 2025. 06. 05.~ 2025. 06. 25.

나. 제안이유

- 상위법에 신체활동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은 직장, 학교 등 생활환경을 고려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행 조례상 '서울 소재 대학(원)생'은 누락되어 있는 상황을 개선하고 사업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명확한 근거규정 마련

다. 주요내용

- 신체활동장려사업 참여 지원 대상자 범위 확대(안 제9조)
- 그 밖의 문구 정비

II.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임영미)

1 주요 내용별 검토

1. 서울형 헬스케어(손목닥터9988) 사업의 ‘대상’ 범위 관련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취지

- 서울시가 스마트워치와 손목닥터 9988 앱을 활용하여 시행하고 있는 ‘서울형 헬스케어(손목닥터9988) 사업’은 현행조례 제9조를 근거로, 사업 참여자(18세 이상 서울시민, 서울 소재 직장인·자영업자, 대학생 포함)들에게 건강목표 달성 및 수행에 따라 연 최대 10만 포인트(=10만 원)를 지급하고 있음.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장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

제8조(신체활동장려사업) 시장은 시민의 신체활동장려를 위해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의3(신체활동장려사업)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2.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신체활동장려사업

제9조(비용의 지원) ② 시장은 제8조 각호의 사업에 참여하는 시민에게 사업 진행에 필요한 장비·도구 및 건강관리 용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 참여 기간의 참여 실적, 횟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상품권 또는 물품 등과 같은 혜택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신체활동장려사업 참여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 주소를 두거나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직장의 종사자로 한다.

- 그런데 현행조례 제9조제3항에는 비용의 지원 ‘대상’을 구체적으로 “서울특별시에 거주 주소를 두거나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직장의 종사자”로 규정하고 있어, 현재 동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서울 소재 대학(원)생’에게 포인트를 지급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는 없는 상황임.

- 이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사업은 예산이 수반되고 그 근거가 중요하기 때문에 ① 현행조례를 개정하여 대학생도 추가를 하거나 ② 아니면 대학생을 사업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음.

< 서울특별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회의록(2025년 3월 5일(수)) >

- 이병도 위원: 손목닥터9988, 이 신체활동에 관련된 사업만 대상이라고 하는 게 좀 더 폭넓게 규정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민 플러스 우리 서울시 직장인까지. 이게 왜 그런지,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 사업만을 대상으로 그렇게 조례가 시민 플러스 서울시내 소재 직장을 다니는 분들이라고 돼 있는 게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 시민건강국: 서울거주 대학생도 해당이 됩니다.
- 이병도 위원: 아니, 조례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좀 문제가 되는 것이고, 거기 조례를 보면……. 조례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시민이 아니라 조례에 서울 소재 시민 플러스 서울 소재 직장을 다니는 사람까지 조례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조례에 없는 대학생이나 자영업자까지 사업의 대상에 포함돼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그 조례 체계랑도 맞지 않고,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 시민건강국: 일단 대학생이 빠져 있고요…….
- 시민건강국: 저희가 그 부분은 미처 고려를 못 한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열거 조항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학생도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신동원 위원: 학생을 포함하시든지 아니면 학생을 빼든지 이런 거죠. 둘 중 하나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빼다면 지금 조례에 근거해서는 문제가 없고, 대학생을 넣는다고 그러면 조례에 그 부분이 없으니까 개정할 필요가 있고, 그렇죠?
- 시민건강국: 정비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 신동원 위원: 사업을 할 때는 항상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 근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 이번 개정안은 ‘서울형 헬스케어(손목닥터9988) 사업’ 참여자에 대한 비용의 지원 근거인 현행조례 제9조제3항에 규정된 ‘대상’ 범위와 관련된 것으로,

이병도 의원안은 서울형 헬스케어(손목닥터9988) 사업의 비용 지원 ‘대상’을 서울 시민으로만 ‘한정’하려는 것이고(안 제 9조제3항),

시장 제출안은 현재 동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나 조례상 근거가 없는 ‘서울 소재 대학(원)생 및 휴학생’까지 비용 지원의 ‘대상’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제3호).

현행	이병도 의원안	시장 제출안
제9조(비용의 지원) ①. ② (생략) ③ 신체활동장려사업 참여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u>서울특별시</u> 에 거주 주소를 두거나 <u>서울 특별시에 소재한 직장 의 종사자</u> 로 한다. <신설> <신설> <신설>	제9조(비용의 지원)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 ----- -- <u>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u> ----- ----- -----	제9조(비용의 지원)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으로 ----- -----. 1. <u>시에 주민등록상 주소 를 둔 사람</u> 2. <u>시에 소재한 직장 에 종사하는 사람(자영업 자 포함)</u> 3. <u>시에 소재한 「고등교 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사람</u> ④ (현행과 같음)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나. 비용의 지원 ‘대상’ 을 서울 시민으로 ‘한정’ (이병도 의원안)

- 서울시가 서울 시민을 넘어서 많은 국민들이 동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현행조례에 ‘서울 시민이 아닌 자’를 조례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지원하는 것은 가능함.
- 「지방자치법」 제1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은 원칙적으로 그 지역적 관할과 인적 관할의 범위 내에서 미치는 것이 「지방자치법」의 기본원리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라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조례도 원칙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역과 그 주민에 대하여 규율하는 것”이어야 하나,

지방자치법
제16조(주민의 자격)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관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그 소관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한도에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할구역의 주민이 아닌 자를 조례의 적용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 법제처의 의견임¹⁾.
- 또한, 「국민건강증진법」은 지방자치단체에게 건강에 관한 국민의

1) 자료: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과(2022. 8.) 2022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p19

[자치법규의 대인적 효력]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은 원칙적으로 그 지역적 관할과 인적 관할의 범위 내에서 미치는 것이 「지방자치법」의 기본원리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조례는 원칙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역과 그 주민에 대하여 규율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관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그 소관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한도에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할구역의 주민이 아닌 자를 조례의 적용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20. 8. 26. 회신 20-0189 의견제시 사례).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부과하고 있으며, 또 건강
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
라고 규정하고 있음.

국민건강증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건강친화제도”란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직장 내 문화 및 환경을 건강친화적으로 조성하고, 근로자가 자신의 건강관리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상담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
제6조(건강친화 환경 조성 및 건강생활의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다만, ‘서울형 헬스케어(손목닥터9988) 사업’은 참여자가 매년 늘어날수
록(’21년 5만명 → ’25년 278만명 목표) 투입되는 포인트 지급 예산(’21년 15억원 →
’25년 582억원)도 크게 증가하는 구조라,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손목닥터9988 사업 연차별 신규 모집인원 및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1년(1차)	’22년(2차)	’23년(3차)	’24년(4차)	’25년(5차)	합 계(누적)
모집 대상		19~64세		19~75세	19세 이상~	18세 이상~	-
		※ 서울시민, 서울 소재 직장인·자영업자 및 대학생 포함					
신규 모집 (누적)		5만명	18만명 (23만명)	22만명 (45만명)	118.2만 명 (163만)	목표치 115만명 (278만)	278만
						현재 (8월 중순)	75만명 (238만)
예산 (시비 100%)	최종예산 (본예산)	4,475 (-)	12,855 (3,522)	27,018 (27,018)	29,653 (18,197)	62,805 (33,188)	136,806 (81,925)
	(포인트)	1,500	1,000	14,000	23,184	58,285	97,970
	(위 치)	2,500	6,500	7,500	2,500	-	19,000
	(시스템)	-	2,883	2,447	1,920	2,814	10,064
	(상담센터)	375	1,802	2,349	1,423	1,171	7,120
	(홍보 등)	100	670	721	626	535	2,652

- 이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그간 동 사업에 대한 ‘효과성’과 ‘비용-편익’ 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제시했었고,

또한 현재 동 사업에 대한 ‘효과성 평가분석 용역’이 아직 진행되고 있는 만큼, 동 사업의 효과성 분석이 완료된 이후에, 사업 ‘확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 서울특별시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회의록(2022년 11월 14일(월))

- 최기찬 위원: 이 사업이 장기적으로 예방적 건강관리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 주장을 입증하려면 타당성을 증명해내야 합니다.
- 윤영희 위원: 신체활동량 증가가 시민의 건강에 도움이 될 거라는 주장에 여기 반박하는 분 없을 것입니다. 다만, 지금 이러한 상황에 미친 것에는 저는 집행부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예산을 사용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의 경제적인 효과, 비용편익에 대해서 시민과 시의회를 설득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 서울특별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회의록(2024년 2월 26일(월))

- 부위원장 이소라: 정말 이 손목닥터 9988 사업으로 인해서 건강보험료가 절감이 되는지에 대한 효과성은 나중에 한번 입증이 돼야 될 사업인 것 같고요

○ 서울특별시의회 제330회 임시회 회의록(2025년 4월 28일(월))

- 도문열 위원: 이때까지 한 1,000억 정도 들어갔고 앞으로도 한 400~500억씩 이렇게 들어갈거다 해서 이렇게 많은 돈이 시민의 세금이 과연 여기에 투입되는 것이 적정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많았는데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한 2배씩 들어가네요, 900억, 1,000억 매년.
- 이병도 위원: 서울시민이 아니고 다른 데에 거주하시면서 서울시내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에게 나가는 예산이 40억 정도 되는 건데 이것들이 왜 그렇게 해야 하는 건지, 딱 이 사업만.

○ 서울특별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회의록(2025년 6월 19일(목))

- 도문열 위원: 지금 서울형 헬스케어 효과성 평가 분석을 하고 있다고 업무보고에 되어 있죠?
- 도문열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6월 중순 예정으로 결함 데이터 반출 심사를 하고 그리고 손목닥터9988 성과 확산 및 건강에 대한 시민 관심 제고를 추진해서 성과보고서 발간 및 성과 확산을 9월에 한다고 되어 있어요.
- 도문열 위원: 그래서 지금 천문학적인 그런 예산을 쓰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추경으로 해서 이렇게 300억의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데 추가로 참여자 수를 계속

늘리는 것을 잠깐 중지를 하고 지금 성과 분석이 2025년 9월이라고 하니까 이 성과 분석 보고 발간되고 나서 효과 분석을 하고 나서...(중략)... 계속 할 건지 말 건지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야 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따라서 동 사업의 효과성 분석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현시점에서는 재정 부담을 고려하고 제한된 예산을 ‘서울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하자는 이병도의원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 됨.

< 손목닥터9988 사업 서울시민과 서울시민 외 가입자 현황>

(단위: 명)

구분	합계	'21~'22년	'23년	'24년	'25년
합계	2,231,134	230,000	217,921	1,182,283	600,930
서울시민	2,047,928	212,994	197,684	1,067,782	569,468
(비율)	(91.79%)	(92.61%)	(90.71%)	(90.32%)	(94.76%)
서울시민 외	183,206	17,006	20,237	114,501	31,462
(비율)	(8.21%)	(7.39%)	(9.29%)	(9.68%)	(5.24%)
자영업자	22,329	726	982	12,785	7,836
직 장 인	149,974	15,291	18,207	95,062	21,414
학 생	10,903	989	1,048	6,654	2,212

- 대상기간 : 2021. 11. ~ 2025. 6. 15.(기준일자: 2025. 6. 15.)

< 손목닥터9988 사업 서울시민과 서울시민 외 포인트 적립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합계	'21~'22년	'23년	'24년	'25년
합계	108,313	2,067	13,471	60,850	31,925
서울시민	99,194	1,898	12,276	55,478	29,542
(비율)	(91.58%)	(91.82%)	(91.13%)	(91.17%)	(92.54%)
서울시민 외	9,119	169	1,195	5,372	2,383
(비율)	(8.42%)	(8.18%)	(8.87%)	(8.83%)	(7.46%)
자영업자	731	13	41	349	328
직 장 인	8,087	151	1,111	4,851	1,974
학 생	301	5	43	172	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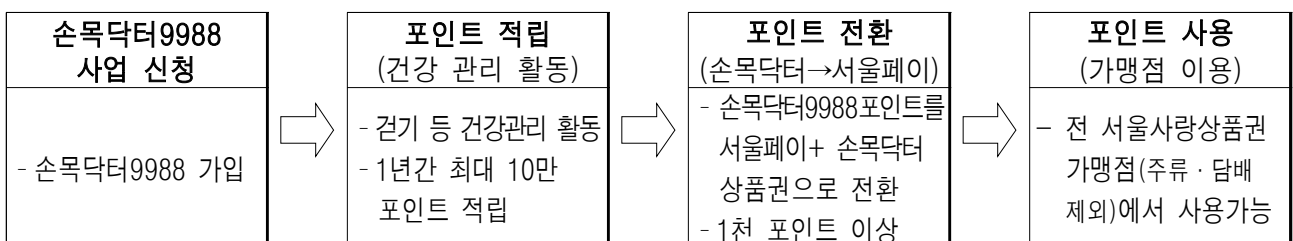
- 대상기간 : 2021. 11. ~ 2025. 6. 15.(기준일자: 2025. 6. 15.)

- 또한, 이병도의원안은 시행일을 2026년 1월 1일부터로 정하여 사업 ‘대상’ 범위의 변경에 따라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

다. 비용의 지원 ‘대상’ 에 ‘서울 소재 대학(원)생 및 휴학생’ 추가(시장 제출안)

- ‘서울형 헬스케어(손목닥터9988) 사업’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연 최대 10만원의 포인트는 「공직선거법」 제112조제1항에서 정한 재산상 이익의 제공으로 볼 가능성이 존재함.
- 「공직선거법」 제112조제1항에서는 ‘기부행위’라 함은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 ‘서울형 헬스케어(손목닥터9988) 사업’은 참여자들에게 건강목표 달성 및 수행에 따라 연 최대 10만 포인트(=10만 원)를 지급하고 있고,
- 참여자들은 적립된 포인트를 서울페이머니로 전환하여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54만 개)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어 「공직선거법」 제112조제1항에서 정한 재산상 이익의 제공으로 볼 가능성이 존재함.

< 손목닥터9988 서울페이머니 지급절차>



- 다만, 현행조례 제9조에 대상(“서울특별시에 거주 주소를 두거나 서울 특별시에 소재한 직장의 종사자”), 방법·범위(“사업 참여 기간의 참여 실적, 횟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상품권 또는 물품 등과 같은 혜택을 예산의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서울형 헬스케어 (손목닥터9988) 사업’은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직무상의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됨.
-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에서는 ‘직무상의 행위’로서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현재 동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서울 소재 대학(원)생’에 대한 포인트 지급이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나목에 ‘직무상의 행위’로 포섭되기 위해서는 현행조례 제9조(비용의 지원)의 금품제공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물론, 동 사업에서 지급하는 ‘포인트’의 경우, 건강목표 달성 및 수행에 대한 금부행위에 대한 반대급부적 보상에 해당하여(다음 페이지 참조) ‘금품제공행위’로 판단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그 대상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해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시장제출안의 개정 필요성도 인정됨.

< '25년 손목닥터9988 포인트 개요(신규 10만, 연속 8.5만) >

세 부 항 목		신규참여자	연속참여자
참여 포인트		3,000P	-
	가입완료(본인인증+닉네임 입력)	1,000P×1회=1,000P	-
	건강관리 목표 설정	-	-
	앱 출석체크	-	-
	설문조사 참여	1,000P×2회=2,000P	-
활동 포인트		94,000P	82,000P
식단 기록	① 1일 2회 이상 기록	-	-
	② 주 3일 이상 ① 실천	-	-
	③ 매 4주 ② 실천	-	-
신체 활동	① 8,000보 걷기	200P×365일=73,000P	200P×365일=73,000P
	② 주 3일 이상 ① 실천	-	-
	③ 매 4주 ② 실천	-	-
	8,000보 20일 성공시	1,000P×12회=12,000P	-
생활 습관	홈트 도전 운동	-	-
	마음건강	-	-
이벤트·챌린지 참여		9,000P	9,000P
성과 포인트		3,000P	3,000P
	건강관리 목표 측정결과 입력	-	-
	건강카드(건강 콘텐츠) 학습	-	-
	설문조사 참여	1,000P×1회=1,000P	1,000P×1회=1,000P
	설문조사 참여(만족도 등)	1,000P×2회=2,000P	1,000P×2회=2,000P
	건강목표 달성	-	-
합 계		100,000P	85,000P

-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1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위 법에 따르면, 서울시에 주소를 두지 않은 개정안 제9조제3항제2호(서울 소재 직장 종사자·자영업자) 및 제3호(서울 소재 대학(원)생·휴학생)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서울 시민’에 속하지 않으므로(다음 페이지 참조),

현행조례 제9조제3항과 연동된 모든 조문들도 ‘대상’의 해석과 적용에 혼란이 없도록 ‘시민’ 또는 ‘시민등’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정비할 필요

가 있다고 생각됨.

현행	시장 제출안
제8조(신체활동장려사업) <u>시장은 시민의 신체활동장려를 위해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의3(신체활동장려사업)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u> 1~5 (생략) 제9조(비용의 지원) ① (생략) ② <u>시장은 제8조 각호의 사업에 참여하는 시민에게 사업 진행에 필요한 장비·도구 및 건강관리 용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 참여 기간의 참여 실적, 횟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상품권 또는 물품 등과 같은 혜택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u> ③ <u>신체활동장려사업 참여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 주소를 두거나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직장의 종사자로 한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제8조(신체활동장려사업) (현행과 같음) 1~5 (현행과 같음) 제9조(비용의 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 ----- 1. <u>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사람</u> 2. <u>시에 소재한 직장에 종사하는 사람 (자영업자 포함)</u> 3. <u>시에 소재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사람</u> ④ (현행과 같음)

- 그밖에 시장제출안 제5조(신체활동장려 기본계획 수립 등)는 제3조에서 이미 서울특별시를 “시”라 약칭하였기에 약칭을 적용하려는 것이

고, 제11조(수당)는 누가(“시장은”) 누구에게(“전문가에게”) 참석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는지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음.

5. 종합의견

- 이번 개정안은 ‘서울형 헬스케어(손목닥터9988) 사업’ 참여자에 대한 비용의 지원 근거인 현행조례 제9조제3항에 규정된 ‘대상’ 범위와 관련된 것으로, ① 이병도의원안은 서울형 헬스케어(손목닥터9988) 사업의 비용 지원 ‘대상’을 서울 시민으로만 ‘한정’하려는 것이고, ② 시장제출안은 현재 동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나 조례상 근거가 없는 ‘서울 소재 대학(원)생 및 휴학생’까지 비용 지원의 ‘대상’에 추가하려는 것임.
- (① 이병도의원안) 동 사업의 효과성 분석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현시점에서는 재정 부담을 고려하고 제한된 예산을 ‘서울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하자는 이병도의원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 (② 시장제출안) 다만, ‘서울형 헬스케어(손목닥터9988) 사업’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연 최대 10만원의 포인트는 「공직선거법」 제112조제1항에서 정한 재산상 이익의 제공으로 볼 가능성이 존재함.
- 물론, 현행조례 제9조에 대상(“서울특별시에 거주 주소를 두거나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직장의 종사자”), 방법·범위(“사업 참여 기간의 참여 실적, 횟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상품권 또는 물품 등과 같은 혜택을 예산의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서울형 헬스케어(손목닥터9988) 사업’은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나목에 해당

하는 ‘직무상의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됨.

- 그러나 현재 동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서울 소재 대학(원)생’에 대한 포인트 지급이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나목에 ‘직무상의 행위’로 포섭되기 위해서는 현행조례 제9조(비용의 지원)의 금품제공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물론, 동 사업에서 지급하는 ‘포인트’는, 건강목표 달성 및 수행에 대한 급부행위에 대한 반대급부적 보상에 해당하여 ‘금품제공행위’로 판단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그 대상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해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시장제출안의 개정 필요성도 인정됨.
- 다만 「지방자치법」 제1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서울시에 주소를 두지 않은 개정안 제9조제3항제2호(서울 소재 직장 종사자·자영업자) 및 제3호(서울 소재 대학(원)생·휴학생)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서울 시민’에 속하지 않으므로,
- 현행조례 제9조제3항과 연동된 모든 조문들도 ‘대상’의 해석과 적용에 혼란이 없도록 ‘시민’ 또는 ‘시민등’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전 문 위 원	김소은	02-2180-8144
입법조사관	우현재	02-2180-8155

의안번호
3004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장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제 안 자		제안일자		소관 상임위	
	이병도 의원(대표)		2025. 8. 11.		보건복지위원회	
주요 내용	〈개정 필요성〉 ○ 조례의 기본 취지인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업 지원 대상을 서울시민으로 한정 필요 ○ 사업 참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재정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제한된 예산을 서울시민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음 〈주요 입법요지〉 ○ 사업 지원 대상자를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정 - 사업 참여 지원 대상자에서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직장의 종사자’ 삭제 (안 제9조제3항 개정)					
추진 경과	○ 2025. 8. 11. 조례안 제안					
부 서 검토 의견	원안가결() / 수정가결 () / 부결() / 보류(○)					
쟁점사항	○ 조례의 상위법령인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의 제2항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제3항에서 신체활동 장려사업은 직장, 학교 등 생활환경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민’은 단순히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 의료·건강 관련 재정지원은 정책의 효과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실제 생활권을 중심으로 고려하는 경우가 많으며, 예방적 건강관리에의 투자는 장기적으로 市の 의료복지 재정 부담 경감 등의 효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지원 대상자를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제한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검토결과: 조례 개정(안) 보류 의견					
대응 방안	○ 필요시 조례 개정 발의한 위원들 방문하여 상세 설명					
상 임 위 처리 결과						
향 후 계획						
담당 부서	스마트건강과	팀장	박홍권(☎2133-7562)		담당	김진아(☎2133-7563)